## 연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문의처 \_ 자산운용회사: 하나 UBS 자산운용㈜ 02-3771-7855 일반사무관리회사: HSBC 펀드서비스㈜ 02-3771-9871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하나 UBS 아름다운미래로증권투자회사제 1 호[채권혼합] (펀드) 정관 제 36 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제 201 조에 의거하여, 2012 년 05 월 22 일 개최되었던 제 7 기 제 1 차 임시주주총회(성원미달로 인한 주총불성립)에 대한 연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: 2012 년 5월 30일 (수) 오전 11 시
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-3 하나대투증권빌딩 15 층 하나 UBS 자산운용㈜ 회의실

3. 회의목적사항 《부의 안건》 제 1 호 의안 - **해산 결의에 관한 건** 

4. 주주님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:

금번 연기주주총회에서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가지 출석한 주주의 주식총수가 발행된 주식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은 "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"은 "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"로 하고 "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 분의 1 이상"은 "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"으로 의결 처리됩니다.

2012년 5월 일

하나 UBS 아름다운미래로증권투자회사제 1 호[채권혼합] 법인이사 하나UBS 자산운용㈜ (직인생략)

##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안내

1.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란 대부분의 주주님이 물리적·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 등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제 190 조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굳이 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활용하시어 주주님의 의견이 펀드의 운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 2.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

- 1) 보내드린 주주총회 통지서의 주총 부의 안건을 첨부된 의안설명서와 함께 읽어 주십시오.
- 2) 의결권 표시 방법 : 보내드린 <u>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</u> 양식의 '의사표시'란에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.반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.
- 3) 실질주주 성명란은 기명날인(사인도 가능)하셔야 합니다.
- 4) 주주님께서 의사표시하신 서면의결권행사 통지서를 동봉한 회송용 봉투에 담아 펀드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인 HSBC 펀드서비스㈜로 주총 개최일전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- 5)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되어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주주님의 의결권과 합산되어 주주총회 의안의 투표에 반영됩니다.

\_\_\_\_\_\_

| 주 주 명  | (인) 주총 참석장          |           | 주총 참석장의 주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주민등록번호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주정보와 동일하  |
| 주 소    |                     | 게 작성하여 주시 |           |
| 보유주식 수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기 바랍니다.   |
| 의사표시   | (제 1 안) 해산 결의에 관한 건 | 찬성        | 동봉된 의안설명서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반대        | 를 참조하십시오. |

2012 년 월 일

| 신청인 주 주 명 : | (6 | 1) | ) |
|-------------|----|----|---|
|-------------|----|----|---|

주 소:

## <의안설명서>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 194 조제 5 항 및 정관제 9 조에 따른 최저순자산액 (10 억) 미달 및 그에 따른 운용효율성 저하 등의 사유로 동 법제 202 조 제 2 호에 의거 불가피하게 금번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산을 결의하고자 합니다.

제 1 호 의안 : 해산 결의에 관한 건